

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임헌호 의원 발의】



2025. 2. 17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71호로 2025년 2월 3일 임헌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2.4.~2025.2.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폐지 이유 및 배경

- 현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우리구(區) 18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칙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를 명시함.
-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한 주민 참여 기구로 시작되었으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.
- 또한,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토대로 시범동(여의, 문래, 양평2, 신길5, 대림1동)을 2년 운영한 후 확대동(영등포본, 영등포, 당산1, 양평1, 신길3, 신길6, 대림3동)을 2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양평1동을 마지막으로 전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.

【우리구 주민자치(위원)회 운영 경과】

연번	동명	구분	주민자치회 1차	주민자치회 2차	위원회 전환	
1	문래동	시 범 동	'19.12. ~ '21.12.	'21.12. ~ '23.12.	'23.12.19. ~	
2	양평2동				'24.1.1. ~	
3	신길5동					
4	대림1동					
5	여의동					
6	영등포본동	확 대 동	해당없음			
7	영등포동					
8	당산1동					
9	신길3동					
10	신길6동					
11	대림3동					'24.6.1. ~
12	양평1동					'25.1.1. ~
13	당산2동	주민 자치 위원회	해당없음			
14	도림동					
15	신길1동					
16	신길4동					
17	신길7동					
18	대림2동					

-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자치구(강남, 서초, 중구)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 중 우리구(區)를 포함한 7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.

【타자치구 주민자치(위원)회 운영 현황】

구 분		자치구수 (개)	자치구명
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	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	7	영등포, 송파, 마포, 종로, 용산, 구로, 동대문
	전 동 주민자치회 실시	15	성동, 광진, 중랑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, 은평, 서대문, 금천, 동작, 관악, 강동, 양천, 강서
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미실시		3	강남, 서초, 중구

○ 종합의견

-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규모 측면에서 양적으로 성장¹⁾했지만, 주민 자치 위원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을 포괄하는 위원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주민 대표성이나 참여 확대 부문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²⁾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비효율성도 보여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은 '23년부터 중단됨.
- 또한 현재 우리구(區)의 모든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바, 이러한 여건의 반영 및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감안 하면 본 조례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됨.
- 그러나, 본 조례의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이 아직 존치하며 주민들이 다시 주민자치회로의 운영을 원하게 되는 경우 그 설치·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의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임.

1)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(1,316개 읍면동/ 144개 시군구/ 16개 시도.) (출처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, 2023.12.기준)

2)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전폭적 예산지원 (5년간 705억원 규모)
(출처: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)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

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